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안 연구

I. 연구의 목적과 배경

최근 핀테크 분야의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의 등장으로 송금·지급결제 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즉, 미리 등록된 지급결제 수단을 통하여 자동으로 계산되는 무인편의점의 등장이나 신용카드 실물 없이도 모바일카드 등록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간편결제, 각종 인터넷·쇼핑 플랫폼에서 선불충전방식으로 이루어지는페이 등 지급결제 분야에서 소비자의 편리성과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국내에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지급결제수단은 98년 이후 신용카드 보급과 사용기반(신용카드 의무수납제, 세제 혜택, 각종 부가서비스) 구축을 계기로 일반 상거래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일상화되어 온 특징을 가지고 있다.¹ 이러한 국내 지급결제 분야의 상황은 신용카드 중심의 금융결제기 외상결제로 인해 가계건전성에 부정적이면서도 신용카드가맹점 입장에서는 카드수수료 지출을 통한 고비용 상거래 구조가 형성되어 경제전반에 부담을 준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²

한편, 핀테크 결제사업자들이 국내에서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간편결제·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금융결제 분야의 혁신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핀테크기업 입장에서는 국내의 지급결제시스템 하에서는 은행결제망 접근 및 이용이 쉽지 않거나 상당한 비용이 부과된다는 점, 제한적인 서비스만 가능하다는 점 등의 어려움이 지적되어 왔다.³

이러한 국내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핀테크의 30% 이상이 금융결제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페이팔·알리바바·레볼루트 등 해외 주요 핀테크기업도 금융결제 기반의 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시장지배력 있는 기술기반의 BigTech 기업 금융분야 진출도 확산되고 있다.⁴

2019년 2월 25일에는 이러한 지급결제 분야의 변화를 인지하고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즉, 혁신적인 결제사업자들이 원활하게 시장에 진입하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결제 시스템의 접근성·개방성을 확대하고, 새로운 결제서비스를 법제도 내에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규



✎ 김명아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 연구위원
✉ kma@klri.re.kr

제 체계를 새로 도입하기 위하여 금융결제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방하고 금융결제업 체계를 전면 개편함으로써 관련 규제와 세제를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⁵

특히, 공동결제시스템인 오픈뱅킹을 구축하고 이를 법제화 함으로써 핀테크기업에 안정적으로 금융결제망을 개방하고, 그동안의 업종별 규율체계에서 벗어나 기능별로 규율 체계를 전환하는 한편 종합지급결제업이나 지급지시결제업 등 새로운 전자금융업을 도입하여 관련 규제나 세제도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⁶

이러한 국내의 소액결제시장 변화와 이에 따른 정부의 금융결제 혁신 방안 추진 과정에서는 사용자 편의 제고와 혁신성을 핵심으로 하는 기술혁신적 금융 서비스·상품의 최종 소비자 편의 평가, 이용자 및 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지위 제고 등 다양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최근의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금융결제 분야에서의 이용자 편의와 이용자 보호에 대한 균형감있는 시각으로 접근하여 법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II. 연구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본 보고서에서의 구체적인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즉,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소액결제시장의 변화와 관련 정책 현황을 소개한다. 이를 위한 전제로서 소액결제의 개념과 유형별 형태 등을 살펴봄으로써 소액결제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도록 한다.

즉, 한국은행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액결제 관련 개념과 최근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되고 있는 간편결제 방식의 지급결제 개념을 비교하여 최근 소액결제시장의 변화를 연혁별로 유형화하여 소개하도록 한다.

또한, 최근 정부가 금융규제혁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소액결제와 관련한 금융결제 혁신방안 등에 대하여도 소개함으로써 향후 새

로운 형태의 소액결제 서비스 발전 가능성을 예측하는 한편, 소액결제시장의 변화 방향성에 대하여서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소액결제 관련 법제의 구성 및 주요 법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소액결제는 소비자의 대금지급 및 결제에 대한 전반적인 법제가 적용되는 한편, 소액결제 수단별로 적용되는 업종별 법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 법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쟁점이 되는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소액결제시장의 변화에 따른 법적 대응방안 도출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본 보고서에서는 핀테크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술혁신에 따른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이 금융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비용편의 내지 사용자편의를 제공하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므로써 정부의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분석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에 따른 다양한 입법론적 개선 가능성을 열어 두도록 한다.

제4장에서는 소액결제와 관련된 해외 입법 사례를 소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지급결제 분야 모바일 소액결제 및 최근의 새로운 지급결제 서비스와 관련하여 OECD 나 BIS, FSB와 같은 국제기구들의 입법적 대응 동향과 해외 각국의 소액결제 관련 입법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법적 대응방안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1) 관계부처 합동,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보도자료, 2019.2.25., 3면.
- 2) 관계부처 합동,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보도자료, 2019.2.25., 3면.
- 3) 관계부처 합동,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보도자료, 2019.2.25., 3면.
- 4) 관계부처 합동,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보도자료, 2019.2.25., 1면.
- 5) 관계부처 합동,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보도자료, 2019.2.25., 1~15면.
- 6) 관계부처 합동,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보도자료, 2019.2.25., 1~15면.

제5장에서는 제4장까지의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지급결제 체제 개편 관련 법적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I) 정부의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에 대하여서는 i) 지급결제시스템의 혁신적 개방에 따른 법적 대응방안 및 ii) 지급결제업 서비스 개편에 따른 법적 대응방안, iii) 지급결제 관련 시장친화적 개선에 따른 법적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II)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으로서 i) 소액결제서비스 이용시 명시·설명 의무 강화, ii) 소액결제를 통한 지급사실의 통지·무 강화 및 거래오류의 정정요청 제도화, iii) 환금·환급 기준의 표준계약서 작성 및 다양성 확보, iv) 결제대금예치제도 및 소비자 보호보상보험 체계의 확대와 관련한 내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III) 지급결제 관련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서는 i) FinTech 기업들의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 시 자금분리의 의무 강화 및 ii) 내부통제제도 강화 필요성과 Reg-Tech 매뉴얼 개발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방안, iii) 전문적 분쟁해결제도 구축과 범부처 분쟁해결기구 설치에 대한 내용을 제안하도록 한다.

또한, 빠르게 변하는 시장상황과 기술의 변화에 따라 금융당국이나 감독당국의 일방적인 제도 설계나 규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늘고 있으므로, IV) 금융당국의 자문·협의 기능 강화 방안과 이에 대한 입법안을 i) 금융당국과 정보통신 분야 소관부처간 협력 체계 구축, ii) 종합지급결제업자에 대한 통합감독 및 규모별 다층적 규제 설계, iii) 금융규제샌드박스 및 다른 산업 분야 규제샌드박스 간 통합감독 시범사업 도입, iv) 금융당국의 전문성 확보 및 지급결제 사업자에 대한 협력·지원 기능 강화 방안 등으로 구성하여 제시한다.

이러한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적 대응방안 연구를 통하여, 향후 새로운 지급결제시스템과 지급결제시장에 대한 정책 추진 시 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적 검토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